

실업극복특위활동계획안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98. 9. 15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

제 출 자 : 실업극복특별위원장

의 의

○ IMF체제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부실기업의 연쇄 도산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전국 실업자 150만여 명 중 부천시에서 발생한 3만여 명의 실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민간단체, 시 집행부,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해결방법을 도출하여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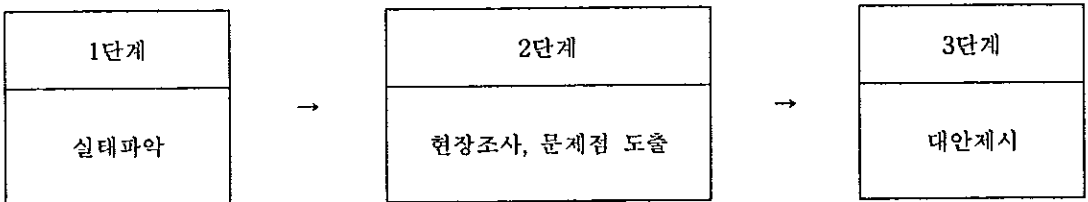
1. 법적 근거

- 가.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
- 나.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

2. 활동방침

- 가.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실태파악 : 중앙정부, 시 집행부, 유관기관, 민간단체, 노동단체조합
- 나. 현장조사(공공근로사업 현장조사 포함) 및 점검을 통한 문제점 도출
- 다. 실업자 구호 대책과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구적인 고용안정대책 마련 등의 대안제시

* 특위활동 요약



3. 3대 활동목표

- 첫째, 기이 발생한 관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포함한 생계구호 대책마련
- 둘째, 향후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용안정 정책제시
- 셋째, 소극적 의미의 고용안정 대책에서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통한 고용 창출의 적극적 방안 제시

4. 활동 세부계획

가. 기간 : 98. 7. 25 ~ 12. 31

나. 대상기관 및 단체의 범위

1) 행정기관

- 시 집행부 : 실업대책상황실, 국제협력담당관실, 지역경제과, 사회복지과, 여성정책과, 공업진흥과, 지역경제보좌관실, 기타 관련부서

2) 민간단체

- 한국노총, 민주노총, 상공회의소, 실업극복을 위한 부천시민운동본부, 실직자쉼터, 인력은행, 인천기능대학, 위탁받은 직업훈련학원

3) 기타 :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개인(실업자) 및 행정기관, 단체 등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)

다. 활동위원회의 구성

1) 구성인원 : 위원회별 3인씩 9명

2) 위 원 장 : 김만수 의원

간 사 : 이재영 의원

3) 위 원

- 기획재정위원회 : 강진석, 김만수, 홍인석 의원
- 총무복지위원회 : 김부희, 박종신, 한병환 의원
- 환경건설위원회 : 송창섭, 이재영, 임해규 의원

4) 사무보조

- 전문위원 : 이상문
- 직 원 : 이병주
- 속 기 사 : 배남순, 박윤주

라. 세부활동계획

1) 위원장 및 간사선임 : 98. 7. 25(기이 선임)

2) 간담회 개최 : 98. 7. 31(금) 15:00

- 집행부 관계자를 통한 1차 현황청취
- 활동계획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확정

3) 워크숍 개최 : 적의선정

4) 회의개최 : 필요시 일정 및 심의안건 수시 결정

5) 내용별(단계별)활동 일정계획

구 분	내 용 별	일 정	비 고
1 단계	실업대책현황 및 실태파악	98. 7. 31 ~ 9. 20	
2 단계	현장조사 및 문제점 도출	98. 9. 20 ~ 10. 20	
3 단계	대안제시	98. 10. 21 ~ 11. 30	

6) 주요활동 세부내역

가) 실업대책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

나)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적시성·적법성 등

다)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운영현황 실태

라) 실직자 쉼터의 원활한 행정지원 등

마) 취업정보센터와 인력은행의 업무 연계성

바) 고용창출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의 타당성

사)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,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집행부 대응방안의 타당성 등

아) 민간조직 실업대책 단체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 등

자) 현장조사 활동장소 : 공공근로사업장, 위탁받은 직업훈련학원, 인력은행, 실직자 쉼터 등 기타

차)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

카) 실업극복에 필요한 기타사항

5. 행정사항

가. 의회사무국

○ 워크숍 개최 등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

○ 수시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실 마련 및 회의준비

나. 집행부 관련부서

○ 실업대책 현황 등 문제점 파악을 위한 각종 자료 요청시 충분한 자료제출(회의개최 3일전 자료 제출)

○ 관계공무원, 유관기관, 민간단체, 관계자 또는 개인 등의 위원회 참석 요청시 신속한 연락을 통한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

다. 특위활동 결과보고(본회의) : 98. 12

○ 일반적인 사항(목적, 기간, 경과 등)

○ 시정 및 건의사항

○ 특기사항 및 처리의견